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671호
----------	--------

제출년월일 2025. 9.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가. 최근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문제 증가에 따라 배달어플, 공공행사, 축제, 스포츠경기장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도모할 필요성 있음
- 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김포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 나.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 (2년)
- 다.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라. 위탁사무 내용
- 위탁업무 :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관리 전반
- 배달앱 가맹점 대상 배달용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지원
 - 지역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 사업 홍보(가맹점 모집) 및 사업참여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지원

3. 관계법령

-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다.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4. 예산수반사항 : 180,000천원 (2026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180,000천원 - 다회용기 대여 수거·세척·운영비: 110,000천원 - 소비자 인센티브 및 홍보비: 12,000천원 - 운영비(인건비,기타운영비 등):40,000천원 - 부가세:18,000천원	180,000	90,000	27,000	63,000

5. 그 밖의 참고사항

(단위: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주문수(건)	45,749	57,031	18,462
예산액	300,000	310,000	300,000
지원대상	배달앱,축제	배달앱,축제,시청컵	배달앱,축제,시청컵,김포FC

소관 실·과·소		자원순환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자원순환과장 장 호 영
	팀장 직위·성명	자원재활용팀장 박 장 호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 한 나(☎277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회용기 세척·관리 체계 운영 필요
- 회수 및 물류체계 구축
- 보관 및 관리 인프라 운영
- 시민참여 유도 및 홍보 필요성
- 안전 확보 및 보험 가입
- 기타 운영 지원 경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국도비 보조사업(국비50%, 도비15%, 시비35%)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추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80,000	189,000	198,450	208,373	218,791	994,614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다회용기대여	110,000	115,500	121,275	127,339	133,706	607,820
	인센티브·홍보비	12,000	12,600	13,230	13,892	14,586	66,308
	운영비	40,000	42,000	44,100	46,305	48,620	221,025
	부가세	18,000	18,900	19,845	20,837	21,879	99,461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 과장 장 호 영 팀장 박 장 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17,000	122,850	128,993	135,442	142,214	646,499
국고보조금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497,307
도비보조금		27,000	28,350	29,768	31,256	32,819	149,193
세 출		180,000	189,000	198,450	208,373	218,791	994,614
국고보조금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497,307
도비보조금		27,000	28,350	29,768	31,256	32,819	149,193
시비		63,000	66,150	69,458	72,930	76,577	348,115
재원 조달		180,000	189,000	198,450	208,373	218,791	994,614
의존 재원	소 계	117,000	122,850	128,993	135,442	142,214	646,499
	국고보조금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497,307
	도비보조금	27,000	28,350	29,768	31,256	32,819	149,193
자체 수입	소 계	63,000	66,150	69,458	72,930	76,577	348,115
	지방세수입	63,000	66,150	69,458	72,930	76,577	348,11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1

관계 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 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7.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성상별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84호)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행사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